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7. 18 선고 2024나310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7. 18 선고 2024나31087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19 선고 2022가단14752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H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

담당변호사 김가영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4. 6. 27.

판결선고 2024. 7. 18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19. 선고 2022가단14752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제1심 공동피고 B는 1억 5,000만 원,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는 2022. 12. 17.부터, 피고는 2022. 12. 15.부터 각 2023. 9. 19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. 5. 5.자 매매계약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제1심 공동피고 D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제1심 공동피고 B 및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, D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는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, 이후 이 법원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용범, 판사 김민순, 판사 이슬아

별지

목록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경기도 남양주시 I에 있는 J건물 K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남양주시 L

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20층 공동주택

1층 내지 20층 각 480.468㎡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경기도 남양주시 I 대 25625.9㎡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제6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.9272㎡

[대지권의 표시]

소유권대지권 25625.9분의 52.867. 끝.

